##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김정호·서삼석·김철민

임종성 · 김경협 · 김윤덕

강훈식 · 신동근 · 김병욱

신정훈 · 임호선 · 윤준병

권칠승 · 윤후덕 · 김교흥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,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,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여성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.

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'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'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30%까지 여성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

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(안 제1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0조(자금지원	우대)	1 • 2	제10조(자금지원 우대) ①・②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③ 정부는 제2항의 시행을 위
			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
			남성과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
			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
			<u>다.</u>